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2016.10.25

개정 2017.03.24

개정 2017.08.08

개정 2018.02.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와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범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21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전략기획, 재무관리 및 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이사회

제4조(이사회 구성)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⑤ 회사는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사외이사가 재임하기 위해서는 제19조에 의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배구조법 또는 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에 정하는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와 여신거래 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②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③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제5호의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주요 경영현황,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받는다.

제10조(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및 위원회 등 회의의 참석
2.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검토 및 문제의 제기
3.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
4. 필요한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입수하여 조사, 연구 및 활용
5.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른 우선 순위별로 합리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

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업무에 대한 사항의 질문, 정보의 제공요구 및 의견의 제시
2. 각종 회의록,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사본의 요청
3.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내외 전문가 등에게 자문의 요청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요한 기밀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사외이사는 제4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 참여에 할애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사외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가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이사회 의장 또는 선임사외이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 등의 회의자료를 회의일 개최 2주 전까지 발송하여 해당 이사회 등에 참여하는 사외이사가 회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의 퇴임)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임
3. 관련 법령 또는 정관 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4. 상법 제385조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특별 결의된 경우

② 이사가 임기의 만료 전 사임할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한 사임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2조제2항에서 정하는 순위의 직무대행권자가 사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최소 분기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회의일로부터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다른 결의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이사회 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 구성 및 운영, 역할 및 책임, 주주 및 고객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사외이사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자기평가 및 이사회 평가로 실시한다.
- ③ 평가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회의 참여도
 2. 안건에 대한 준비도
 3. 회사에 대한 이해도
 4.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5. 사외이사의 윤리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경영위원회

②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를 추천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 시켜야 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19조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가 소유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3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 본다.

제24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한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성과보수체계에 위험관리 측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5항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제5항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⑤ 제4항에 기재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라 한다)

⑥ 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회사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경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임명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개최시기, 소집절차, 의결사항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 평가의 평가자는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한다.

③ 이사회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③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29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30조(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제11조에 따른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부여된 직책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⑤ 위험관리책임자는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31조(임원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임·퇴임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다.

③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집행임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2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에 대한 교육) ① 회사는 임원 및 임원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 또는 외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원 및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사내, 사외 및 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교육 또는 연수 결과를 임원 선임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① 회사는 재무, 운영 효율화, 인적자원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업적을 기반으로 매년 임원의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평가 결과는 임원의 승진, 보직해임, 성과보수 등의 주요 척도로 활용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급여, 성과보수, 퇴직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지급 기준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급여와 회의참석에 따른 회의비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최고경영자에 관한 사항

제36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제38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 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제39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

관계자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경영승계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추천 받을 수 있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탐색하여야 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40조(비상경영)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이사 또는 경영진의 요구 등으로 비상경영을 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경영 시 이사회는 경영승계 개시일자,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고,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한다.

③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는 최고경영자의 일상적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보유한다. 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④ 회사는 비상경영 개시 후 지체 없이 제39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이하 "지원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제42조(최고경영자의 자격) ①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한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윤리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리더십과 경영혁신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자로 선임한다.

제4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

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린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44조(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를 상당 기간으로 하고 최고경영자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대표이사의 권한 위임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명시한다.

제6장 공시

제45조(지배구조 연차보고서) ① 회사는 매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작성기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5항을 따른다.

제46조(수시공시) ①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사회가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47조(주주총회) ① 회사는 사외이사 관련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 사외이사후보추천 등 성격이 상이한 안건들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참석률
2. 안건별 찬반 주식 수 비율
3.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 주식 수

③ 회사는 주주가 지배구조법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자격요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연임 포함)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폐) 「사외이사제도 및 공시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범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